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6년 10월호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 K-IFRS 제 1012 호 '법인세' 공개초안
- K-IFRS 제 1115 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공개초안

세무정보

- 한국-홍콩 조세조약 발효
- 한국-폴란드 조세조약 의정서 (Protocol) 개정
-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활법)
목적
(1) 목적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인수합병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

기활법의 주요내용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주회사규제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에서 50%로 조정 ■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시 현행 6개월내 해소해야 하나 1년으로 연장 |
| 간이합병 요건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합병회사 주식의 90%이상 보유했을 때 가능했던 간이합병기준을 2/3이상 보유로 완화 |
| 소규모합병 요건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시 발행신주가 주식총수의 20%(기존 10%)를 넘지 않으면,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가능 |
| 주총 소집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총 소집 시 관련 절차기간으로 2주에서 1주로 단축 |
| 주식매수 청구권행사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을 주총 후 20일에서 10일이내로 단축 ■ 청구된 주식에 대한 상장사 매입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추가적으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세제지원, 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원샷법'으로 불림

심의
(3) 심의

기업은 기활법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재편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각 30일 이내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예정(산업부 차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민간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소와 회계사·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는 자로 자격 규정
- (회의소집·의결요건) 공동위원장이 회의소집 및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승인거부 및 취소
(4) 승인거부 및 취소사유

- (승인거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 등)의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
- (취소)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

**K-IFRS 제 1012호
 ‘법인세’ 공개초안
 주요내용**
K-IFRS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 주요 내용, 시행일 및 경과규정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일시적차이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일시적차이도 채무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산정함
 - 채무상품 장부금액의 예상 회수방식[매각, 사용(만기까지 보유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에 관계없이 채무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일시적차이가 존재함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의 추정

- 미래 과세소득을 예측하기 위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할 수 있음
- (예) 계약상 원금과 이자 모두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이 할인율의 상승에 따라 하락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 일시적차이는 자산의 예상되는 회수방식에 관계없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하여 산정하나,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 추정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손금)효과를 고려하기 전 금액

(예) 차감할 일시적차이 100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해당 차감할 일시적차이 (100)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한 미래 과세소득이 50 이라면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은 100을 공제하기 전인 150으로 조정하여 평가함

-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해당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가 고려된 후의 미래 과세소득과 비교한다면 검토과정에서 관련 세효과가 이중으로 고려된 것임

(3)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 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검토 단위

-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세법상 공제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을 제한하는지에 따라 유형 간 구분/통합 평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함
- 예를 들면, 세법상 자본손실을 자본이익에서만 공제하도록 허용한다면, 자본손실에 따른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같은 유형의 다른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통합하여 평가하지만 다른 유형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는 구분하여 평가

(4)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17.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 적용 가능
-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비교표시 기간의 기초 자본의 변동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음.

K-IFRS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공개
초안 주요내용

K-IFRS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공개초안 주요 내용
(2016.09.08)

■ 도입배경

- US GAAP과 IFRS의 차이로 비교 가능성 저하
- IFRS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적용이 어려움
- 공시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수행의무의 식별

(1) 수행의무의 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명확히 함
-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행의무로 식별함. 식별된 수행의무는 K-IFRS 1115(안)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회계단위임(문단 22)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재화나 용역은 계약 내의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문단 27~29)
 -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음
 -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a series of distinct goods or services*)

- 하나의 계약에서 다수의 동일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식별되고, 이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며(5단계 참조)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면 다수의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문단 23)

본인·대리인

(2) 본인·대리인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이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것인지(본인),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

하는 것인지(대리인)를 판단함.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한다면 본인이며,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임.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지표를 참고함

- ① 계약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 ② 고객의 주문 전·후, 운송 중이나 반품할 때에 **재고위험**이 있는지
- ③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정할 때 재량**이 있는지
- ④ **대가가 수수료** 형태인지
- ⑤ 고객에게서 받을 금액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3)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 라이선스 제공 후 기업의 활동이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익을 일정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함
- 지적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에서 접근권을 제공하는지, 사용권을 제공하는지를 판단

| | | |
|------------|----------------------------------|--------------|
| 접근권 |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지적자산에 접근할 권리 제공 |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 사용권 |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자산을 사용할 권리 | 일시에 수익 인식 |

- 지적자산이 전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변동된다면, 고객이 라이선스를 통제할 수 없음.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적자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약속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 ① 지적자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당연히 예상
- ② 고객은 그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
- ③ 그 활동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음

공시사항 재무제표 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주요 공시사항
(4) 주요 공시사항

| 주제 | 주요 공시사항 |
|------------------------------------|---|
| 수익의 구분 (문단 1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주별 수익금액(지역, 재화·용역의 유형, 이전시기, 유통채널, 계약기간, 고객의 유형 등) |
| 계약 잔액 (문단 116~ 1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취채권·계약자산·계약부채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 수행의무의 이행시점과 지급시점에 대한 설명 • 계약자산·계약부채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 |
| 수행의무 (문단 119~ 1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의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시기 • 유의적인 지급조건 • 반품의무, 환불의무, 보증 등의 의무 •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과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 |
| 유의적인 판단 (문단 123~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의무의 이행 시기, 거래가격 배분금액을 결정할 때에 사용한 판단 • 진행률 측정 방법을 선택한 이유 • 통제의 이전시점을 결정한 근거 • 변동대가의 추정, 유의적 금융요소 등 측정에 사용된 방법, 투입변수, 가정 |
| 계약체결원가와 계약이행원가 (문단 127~ 1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 인식한 자산의 범주별 잔액 • 기간 중 인식한 상각금액과 손상차손 금액 |

시행일 및 경과규정
(5)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
- K-IFRS 1115(안)을 최초 적용할 때에는 ①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②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

세무자문본부

02-316 - 6600

세 무 정 보
한국-홍콩 조세조약 발효

2014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 2016년 9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2016년 9월 27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홍콩은 2014년에 이미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었습니다.

조세조약타결에 따라 과거 조세정보와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 등 폭넓은 조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홍콩 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홍콩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구분 | 상세내용 |
|---------------------|---|
|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치공사의 경우 12개월 초과 |
| 부동산소득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당소득 | 제한세율: 자본의 25%이상 소유시 10%, 그 외 15% |
| 이자소득 | 제한세율: 10% |
| 사용료 | 제한세율: 10% |
| 양도소득 | 부동산, 부동산이 50% 초과하는 법인 주식: 원천지국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기타 주식 등: 원천지국(주식 소재지국) 과세 |
| 종속적인 인적용역 (고용소득) | 용역수행지국과세 |
| 법인의 이사 |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 |
| 예능인 및 체육인 | 용역수행지국 과세 |
| 연금소득 | 지급지국과세 |
| 기타소득 | 거주지국 과세 |
| 학생 | 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국내조세 중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일 또는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폴란드 조세조약 의정서(Protocol) 개정

주요내용

2013년 10월 22일 서명된 바 있는 한국·폴란드 조세조약 개정의정서가 2016년 9월 7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6년 10월 15일자로 발효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조세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
- 양도소득에 국내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 과세 추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추가
 - 폴란드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기업에게 지급되는 배당
 - 한국 기업의 자본금의 75% 이상을 소유하는 폴란드 기업에게 지급되는 배당
- 조세회피방지 위한 금융기관 정보교환 가능
- 적용시기
 - 원천징수대상 조세 : 2017.1.1. 또는 그 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7.1.1.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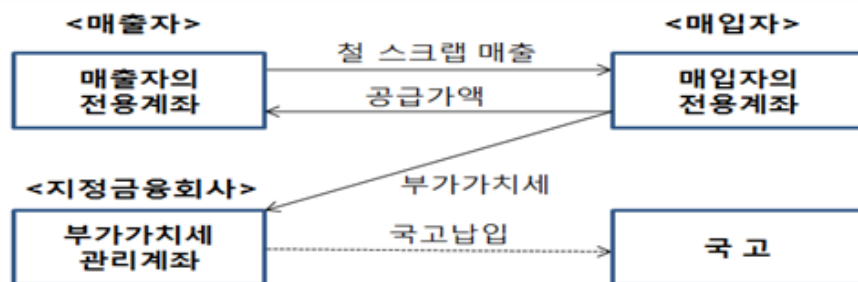
'철 스크랩'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관련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사항>

- 적용 대상: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및 법인
- 대상품목: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고철)
- 계좌개설 및 대금지급 관련 주요사항
 - (계좌개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전용계좌 개설 필요.
 - (대금지급) 사업자가 철 스크랩을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가산세 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쌍방,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 지정금융회사(7개): 국민은행, 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제외),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 사업자는 위 지정금융회사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철 스크랩 시행일인 2016년 10월 1일부터 가능함(다만, 신규계좌에 한해 9월 1일부터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 구리스크랩 사업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기존 구리스크랩계좌(신한은행)만 사용이 가능하고, 2016년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은행 변경 가능(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

《 거래흐름도 》


해당 제도는 현행 매출자 거래징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태 방지하고 스크랩 등 법정품목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하며, 궁극적으로 자원재활용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법정 품목>

| 품 목 | 적용시기 | 내 용 |
|--------|------------|--|
| 금지 금 | 2008.7.1.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
| 고금 | 2009.7.1. |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으로서 순도 58.5%(14K) 이상 |
| 구리 스크랩 | 2014.1.1. |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 함유량 40% 이상 |
| 금스 크랩 | 2015.7.1. |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00분의 1 이상 |
| 철스 크랩 | 2016.10.1.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스크랩 잉곳(Scrap ingot)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과 동시에 사우디 아라비아 소득세법상 사우디 아라비아의 거주자인 이른바 ‘이중거주자’로써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사우디 아라비아에 모두 있다고 할 것 인데, 원고의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훨씬 긴 점, 원고와 배우자의 주요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 법인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 국내 생활관계에 사용한 점, 사우디 아라비아 법인의 주요거래처가 대한민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아라비아 현지법인이고, 사우디 아라비아 법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조 제 4항 제 1호 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 2016두 37584, 2016.8.17.)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